

【 3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5. 4.

제 출 자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우리시의 인구가 15만이 초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1과를 승인받아 사회산업국과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개발국을 폐지하고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설치함. (안 제4조)
- 나. 총무국 소속과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를 삭제하고 관련 분장사무를 삭제함. (안 제5조)
- 다. 사회산업국을 신설하고 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명칭변경),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환경보호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 (안 제6조)
- 라. 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에 건설행정과, 도시과(명칭변경), 도로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신설),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 (안 제6조의2)
- 마. 국·과의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7건 개정 (안 부칙 제2항)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개발국”을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제10호내지 제13호를 삭제한다.

①총무국에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다음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사지원 및 고용정책,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민자·외자유치, 경영수익사업,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4. 농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정, 농지관리, 농산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여성·가정복지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7. 공중·식품위생·장사에 관한 사항
8. 청소행정·폐기물시설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행정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공유재산 및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점상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8. 교통·운수에 관한 사항
9. 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산림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 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중 “개발국장”을 삭제한다.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중 “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3. 「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31조제3항중 “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농림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4.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조례」 제5조제2항중 “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5.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중 “농림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6. 「양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조제2항중 “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제3항중 “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개발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 <u>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u> -----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를 둔다. ② (생략) 1. ~ 9. (생략) 10. <u>사회복지여성가정복지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u> 11. <u>공중·식품위생·장사에 관한 사항</u> 12. <u>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u> 13. <u>청소행정·폐기물시설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u>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개발국에 두는 과) ①개발국에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를 둔다. ② 개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 2. <u>조사지원 및 고용정책,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 3. <u>민자의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u> 4. <u>농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u> 5. <u>농정, 농지관리, 농산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u> 6. <u>산림에 관한 사항</u> 7. <u>국·공유재산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u> 8. <u>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u> 9. <u>하수에 관한 사항</u> 10. <u>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u> 11. <u>도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 <u>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u> ② <u>사회산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u> 1. <u>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 2. <u>조사지원 및 고용정책,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 3. <u>민자의자유치, 경영수익사업,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u> 4. <u>농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u> 5. <u>농정, 농지관리, 농산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u> 6. <u>사회복지여성가정복지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u> 7. <u>공중·식품위생·장사에 관한 사항</u> 8. <u>청소행정·폐기물시설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u> 9. <u>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u>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12. 노점상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u></p> <p><u>13.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u></p> <p><u>14. 교통·운수에 관한 사항</u></p> <p><u>15.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에 관한 사항</u></p> <p><u>16.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u></p> <p><u>17. 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p> <p><u>18. 민방위·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제6조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행정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p> <p>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p> <p><u>1. 국·공유재산 및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u></p> <p><u>2.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u></p> <p><u>3. 하수에 관한 사항</u></p> <p><u>4.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에 관한 사항</u></p> <p><u>5. 도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u>6. 노점상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u></p> <p><u>7.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u></p> <p><u>8. 교통·운수에 관한 사항</u></p> <p><u>9. 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p> <p><u>10. 산림에 관한 사항</u></p> <p><u>11.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u></p> <p><u>12.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u></p> <p><u>13. 민방위·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u></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9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5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17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17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18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21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2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2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20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23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26개 이내	
군	용진군·울릉군		8개 이내	
	중평군		9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9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	3개 이내	16개 이내	
구	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4개 이내
		자치구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자치구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입법예고 실시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05. 3. 25 ~ 4. 3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및 검토내용

의견자	의견내용	검토내용	수용여부
김현재	○ 공원녹지과를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이관 - 유사기능인 도시와 건축관련국의 소속이 바람직 함.	○ 공원녹지과는 도시개발로 설치되는 공원 및 그린벨트내의 건축허가 업무등으로 볼때 국이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용
현상식	○ 농업축산과의 명칭을 농축산과로 변경하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친근감 있다고 판단됨.	○ 농축산과로 과 명칭을 명기하는 것이 발음하는 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수용
	이 하	여 백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우리시의 인구가 15만이 초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1과를 승인받아 사회산업국과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개발국을 폐지하고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설치함. (안 제4조)
- 총무국 소속과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를 삭제하고 관련 분장 사무를 삭제함. (안 제5조)
- 사회산업국을 신설하고 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명칭변경),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환경보호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 (안 제6조)
- 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에 건설행정과, 도시과(명칭변경), 도로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신설),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 (안 제6조의2)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참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붙임참조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행정기구설치 조례 수정동의안

이 항 원 의 원

행정기구설치 조례 수정동의안

이항원 의원입니다.

개정안의 “건설도시국”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 도시분야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의 도시화추세로 보면 건설분야보다는 도시분야가 더 중요하고, 중심으로 추진해서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의 국 명칭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회산업국의 경우 산업경제과를 주무과로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분야가 주민들의 실생활 거의 전 분야에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속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공원부서와 산림부서는 업무 성격상 당연히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가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녹지관리부서의 담당업무인 그린벨트 중 많은 주거 밀집 지역이 곧 해제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관리해야 할 그린벨트는 주거지역이 아닌 보존해야 할 농지와 임야만 대부분 남게 되므로
공원과 산림 분야와 더불어 업무 성격상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원안 제4조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 으로

제6조 제①항 “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를 **공원녹지과를 추가해서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로

제②항 6호를 **1호**로, 7호를 **2호**로, 9호를 **3호**로, 8호를 **4호**로, 1호를 **5호**로, 2호를 **6호**로, 3호를 **7호**로, 4호를 **8호**로 5호를 **9호**로

그리고 **10호에 산림에 관한 사항을**

11호에 개발제한 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6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 으로

제6조의2 제①항 “건설도시국에 건설행정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를 **공원녹지과를 삭제**하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로

제②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으로

4호를 **1호**로,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그리고 **10호와 11호를 삭제**하고

12호를 **10호**로 13호를 **11호**로 하고

부칙 제2항 6호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으로

7호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말씀드린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